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84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서범수·성일종·김은혜

장동혁 · 김상욱 · 이헌승

김정재 · 김태호 · 윤영석
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, 인동간격 등 건축 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$1\sim2$ 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.

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·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이에,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, 청년, 신혼부부 등 1~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0호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0호 중 "이란 300세대 미만의"를 "이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		
20. "도시형 생활주택" <u>이란 300</u>	20 <u>이란</u>		
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			
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.			
21. ~ 29. (생 략)	21. ~ 29. (현행과 같음)		